

# L.V.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 공정 심의 명령 이행에 관한 집단 소송 합의

### 보상청구서 제출 안내문

합의로 인한 보상 중 어느 것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귀하는 첨부된 보상청구서를 완성하여 2008년 6월 30일 당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보상청구서를 마감 기한 이전에 제출하지 못하면, 귀하의 보상 요구는 거절되고 귀하는 이러한 보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집단 고지에 설명된 대로 집단에서 탈퇴하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귀하는 합의동의서, 보상면제 및 최종판결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본 보상청구서 작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1-800-918-8061 로 전화 하시거나 웹사이트 [www.hearingordersettlement.com](http://www.hearingordersettlement.com) 를 방문해 주시고, 아동 권익 옹호 협회(Advocates for Children)에 전화 1-212-947-9779 교환 577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I. 보상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보상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귀하께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2000년 12월 13일이나 그 이후, 그리고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뉴욕시 교육청 (이하 "DOE")을 상대로 공정심의담당관으로부터 유리한 명령을 득했거나 DOE가 참석한 공정심의회에서 심의록에 합의약정이 기록된 분이어야 하며
2. 이러한 명령 또는 합의안의 이행이 제 때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분. 이제 와서 DOE가 귀하의 명령이나 합의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DOE가 명령을 시기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는 여전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I. 보상 청구 방법

##### 1. 제 1 단계 - 보상청구서 기재 및 서명

귀하께서 지급금이나 바우처,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하가 원하시는 유형의 보상을 선택하시고 청구서에 서명하십시오. 만일 귀하의 명령 또는 합의가 제 때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귀하는 다음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DOE로 하여금 사립학교나 사설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혹은 귀하께서 지불하신 서비스 대금을 환급하도록 조치한 공정심의명령에 관한 지불,
2. 교육 서비스 또는 학습 지원 기술 바우처 및/또는
3. 교육 서비스 또는 학습 지원 기술에 지출된 비용의 환급.

귀하께서 수령하게 될지도 모를 보상은, 다음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께서 득한 명령상에 나와 있는 DOE가 취해야 할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될 수 있는 각 유형의 보상에 관한 설명은 보상청구서에 나와 있으며 보상청구서와 함께 받으신 공지문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2000년 12월 13일이나 그 이후, 그리고 2008년 1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명령을 받으셨고, 이러한 명령 중 한가지 이상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신다면 각 명령에 대해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한 학년도당 한 가지 명령에 대한 배상만 받게 됩니다.

## 2. 제 2 단계 -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A. 귀하께서 단지 보충 교육 서비스 또는 학습 지원 기술에 관한 바우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보상 청구 증빙 양식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자측의 회사명과 주소가 인쇄된 편지지에 적힌 송장으로서 요청 또는 지불해야 할 대금의 액수와 제공된 서비스 내역을 명시한 것,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공술서로서 요청 또는 지불해야 할 대금의 액수와 제공된 서비스 내역을 명시한 것; 그리고
2. 지불 완료된 수표의 양면, 신용카드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전자 이체된 직불카드 내역을 보여주는 온라인 화면, 대부 합의서, 또는 지불된 대금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공술서.
  - a. 상기 1에 명시된 서류중 하나를 입수하지 못하신 경우, 귀하께서는 이 같은 서류를 입수하지 못한 경위를 사유서로 작성한 뒤 보상청구서에 첨부하여 독립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독립회계감사관은 사유의 타당함을 심사결정 할 수 있습니다.
  - b. 만일 귀하께서 득한 명령이 DOE로 하여금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귀하께서 이 금액만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어떤 증빙 서류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c. 만일 귀하께서 득한 명령이 DOE로 하여금 귀하 이외의 제 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귀하께서 바로 이 대금의 지불만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상기 2에 명시된 증빙서류 중 어느 것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d. 만일 귀하께서 명령을 득한 일자가 200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라면, 귀하는 본 청구서를 제출하신 이후에, 합의안 최종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빙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명령에 의한 대금지불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 3. 3 단계 - 2008년 6월 30일 까지 보상 청구서를 담당 행정관에게 보내십시오.

완성된 청구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LV et al v NYC Dept of Education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000 #6495  
Merrick, NY 11566-9000